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146
----------	--------

제안연월일 : 2021. 11. 26.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비용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다. 입법예고:
- 다. 조례안: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비용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마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